

#### 4. 교육과정위원회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14.명칭변경)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양 및 전공 교육과 교과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12.14.자구수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0.4.21.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016.12.14. 개정) (2020.2.6. 개정) (2020.4.21. 개정) (2023.2.7. 개정)

1. 당연직 : 각 처장, 학부(과)장
2. 1회 외의 총장이 위촉한 위원
3. <삭제. 2020.2.6>

③ 위원회 산하에 학부(학과)교육과정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6.12.14.개정)(2020.2.6.개정)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입학처에서 관장한다.(2020.2.6.개정)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